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조문 대비표

【이 전】	【개 정】	【비 고】																										
Ⅲ. 개인정보 처리위탁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직/기술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업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자(“위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table><tr><td>위탁업체</td><td>수탁업체</td><td>위탁업무명</td><td>개인정보 이용기간</td></tr><tr><td>국토교통부</td><td>한국교통안전공단</td><td>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d><td>위탁계약 종료시 까지</td></tr><tr><td>한국교통안전공단</td><td>(주)엠피데이터</td><td>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d><td>위탁계약 종료시 까지</td></tr></table>	위탁업체	수탁업체	위탁업무명	개인정보 이용기간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엠피데이터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Ⅲ. 개인정보 처리위탁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관리직/기술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업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자(“위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table><tr><th rowspan="2">순번</th><th rowspan="2">부서명</th><th colspan="2">위탁받는 자</th><th rowspan="2">위탁업무</th><th rowspan="2">이용기간</th></tr><tr><th>수탁자</th><th>재수탁자</th></tr><tr><td>1</td><td>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td><td>한국교통안전공단 디지털혁신처</td><td>(주)엠피데이터 (주)비유소프트</td><td>2024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클라우드 이전 재구축 용역</td><td>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td></tr></table>	순번	부서명	위탁받는 자		위탁업무	이용기간	수탁자	재수탁자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디지털혁신처	(주)엠피데이터 (주)비유소프트	2024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클라우드 이전 재구축 용역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행화
위탁업체	수탁업체	위탁업무명	개인정보 이용기간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엠피데이터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순번	부서명	위탁받는 자		위탁업무	이용기간																							
		수탁자	재수탁자																									
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디지털혁신처	(주)엠피데이터 (주)비유소프트	2024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클라우드 이전 재구축 용역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위탁계약 종료시 까지																							
-	Ⅳ.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결과 ①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받고 있습니다. ②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table><tr><th>시스템명</th><th>개인정보파일명</th><th>사업명</th><th>수행년도</th></tr><tr><td>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d><td>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회원정보, 운수종사자 정보</td><td>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td><td>2012.09. ~ 2012.10.</td></tr></table>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사업명	수행년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회원정보, 운수종사자 정보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012.09. ~ 2012.10.	○ 제4조 개인정 보 영향평가의 수 행결과 조항 추가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사업명	수행년도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회원정보, 운수종사자 정보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2012.09. ~ 2012.10.																									
-	Ⅴ.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판단기준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여부 현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수집, 이용중인 개인정보파일중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사항은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의 기준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처리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7조 추가적 인 이용·제공의 판단기준 조항 추 가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개인정보포털(https://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경 로 현행화
I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중증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I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현행화
IV.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6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다. 보상금·금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VI.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금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정보주체와 법 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행사 현행화

